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16. . . (제 회)	

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
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출자	생활보장과장
제출 연월일	2016. . .

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침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강북구 관내 장애인단체들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도록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고, 장애인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관련 법률 및 목적을 명시함 (안 제1조)
- 나. 장애인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하여 적합하게 사용하고자 함 (안 제3조)
- 다. 장애인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여 조례의 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용허가를 하고자 함 (안 제5조)
- 라. 장애인회관 사용료 면제 및 예산을 지원하여 원활한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7조)
- 마. 조례의 목적과 지시사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도하고자 함 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

나. 예산조치: 2016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:

1) 입법예고(2016. 04. . ~ 2016. 05. .)

2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동의

3)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 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(이하 "회관"이라 한다)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291(수유동)에 둔다.

제3조(시설)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무실, 회의실, 상담실
2.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

제4조(사용허가)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회관 사용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회관 사용허가 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·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제5조(사용허가 대상)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강북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

2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

제6조(사용의 제한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

2.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

3. 제4조제3항을 위반했을 때

제7조(사용료의 면제 및 지원) ① 구청장은 회관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(이하 "사용자"라 한다)가 회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회관의 운영 및 유지·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양도금지)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.

제9조(지도점검)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·점검을 할 수 있다.

제10조(사용허가 취소)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다만,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

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제6조를 위반하였을 때
2. 제9조에 따른 지시사항에 불응하는 경우
3.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
경우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
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